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17. 08. 29.	규정 제137호
개정	2018. 07. 05.	규정 제163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72호
개정	2019. 12. 23.	규정 제196호
개정	2021. 06. 15.	규정 제224호
개정	2022. 01. 07.	규정 제234호
개정	2022. 09. 13.	규정 제2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전환,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인사규정,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진흥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만화박물관·만화도서관 및 진흥원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채용

제4조(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① 진흥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의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하여 전환평가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단, 진흥원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제5조(채용)** ① 진흥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
 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의 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진흥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근로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3장 근로시간

- 제6조(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시간제 무기계약직은 직종의 특성상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실시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간 : 09:00 ~ 18:00 (월~금)
 ○ 휴게시간 : 12:00 ~ 13:00
 ③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업종의 특성상의 업무사정 및 직종과 계
 절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간외근로) 진흥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이 시간외근로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휴일·휴가

- 제8조(유급휴일)** ① 직원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주휴일은 월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업 부서별 또는 시설운영 여건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정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근로자의 날
 4. 창립기념일(12월4일)
 5. 기타 진흥원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 ② 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하며,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8조의2(휴일대체) 휴일근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3.]

제9조(휴일변경) <삭제 2018. 12. 28.>

제10조(연차유급휴가) ① 진흥원은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2018. 07. 05.>

④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진흥원은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진흥원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임 금

제12조(임금원칙) 진흥원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반영하여 진흥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임금을 산정한다.

제13조(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 ① 임금은 당월 1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금의 특례) 직원이 결근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해당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퇴직급여) 진흥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제16조(퇴직급여 중간정산) ① 진흥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유로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간을 산정한다.

제6장 복 무

제17조(전보) ① 진흥원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근무지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진흥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인수인계의 사유가 발생 시 인계 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19조(공민권행사) ① 진흥원은 직원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적직무의 집행에 따른 시간을 배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직원은 공민권 행사에 따른 사유시간 배정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0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로 진흥원의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휴직 · 복직

제2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때 : 2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징·소집 기간
3. 직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때 : 6개월 이내

제22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면직으로 처리한다.

③ 질병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진흥원은 복직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즉시 복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 형편에 따라 다른 부서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휴직기간의 처리) ①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24조(휴직의 절차) 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적절한

증빙서류와 함께 예상되는 휴직일수와 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휴직원을 소속 부서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중이라도 진흥원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진흥원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퇴 직

제25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이 도래하였을 때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의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의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8조(퇴직원) 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08. 29. 규정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7. 05. 규정 제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규정 제1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3. 규칙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급휴일 및 휴일대체의 적용례) 제8조(유급휴일) 및 제8조의2(휴일대체)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6. 15. 규칙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07. 규칙 제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9. 13. 규칙 제2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무기계약 전환 심사용)

○ 평가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진흥원 발전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능력	업무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태도			10점	10	8	6	4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감점				
합계				점			
평가위원				(서명)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수령 확인서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과 급여조건에 동의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근로자 ○○○ 인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09. 13.>